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9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90,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00,25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가. 주식회사 B(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 이하 'B'이라 한다)은 1984. 8. 10. 통신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8. 5. 19.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2010. 11. 22.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0. 11. 23. 같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을 제6, 7호증).

나. B 설립 당시 B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원고가 4,900주를, C이 5,100주를 각 인수하였다. 한편 B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1989년경 C 보유 주식 5,100주 중 940주가 원고에게, 나머지 4,1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D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 사건 주식은 2000. 3.경 E에게, 2014. 4.경 원고에게 순차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4.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8. 5.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2014. 4.경 B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 발행주식 총수 대비 이 사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3,490,040원과 농어촌특별세 300,250원 부과 처분(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을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9년경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당시 B 직원이었던 D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게 명의신탁하였고, D이 B을 퇴직한 2000. 3.경 위 주식을 당시 B 직원이던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E가 B을 퇴직한 2014. 4.경 위 주식을 실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2014. 4.경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나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의 주주명부 상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1989년경 C에서 D으로, 2000. 3.경 D에서 E로, 2014. 4.경 E에서 원고로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2014. 4.경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4. 4. 22.자 및 2016. 9.자로 작성된 E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1, 2호증)에는 'E가 2000. 3. 14.경부터 2014. 4.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위 기간 중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고가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E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에 위 주식에 관한 소유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2016가단42677호, 이하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갑 제3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의 증거로 E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1, 2호증)와 이 사건 무변론 판결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1989년경 이 사건 주식을 C로부터 양수하였다거나 위 주식이 D, E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 D, E가 B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 주식 5,100주를 양수하여 D,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위 5,100주 전체를 원고 명의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이 사건 주식만을 D, E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갑 제1호증(인증서)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E로부터 이전받을 당시에 작성되었고, 갑 제2호증(확인서)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9.경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의 소송도 이 사건 처분 후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 참조),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B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D 또는 E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설령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1

목록

1. [redacted]시 [redacted]구 F아파트 생활편의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 집합건물 제1층 제101호 23.712㎡.
2. 같은 제1층 제102호 24.624㎡.
3. 같은 제1층 제103호 22.800㎡.
4. 같은 제1층 제104호 24.624㎡.
5. 같은 제1층 제105호 31.126㎡.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별지2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